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 | |
|------|------------|
| 제정일 | 2008. 4. 1 |
| 개정일 | 2018. 4. 1 |
| 개정차수 | 5차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정관 제31조의 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 2조 (구성 등) ① 평의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별로 교원대표 5인, 직원대표 4인, 조교대표 1인, 학생대표 1인,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1인을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1)
-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3조 (위촉 등)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구성원이 참여하여 2배수 추천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2.13)
- ② (삭제 2012. 7.22)
- ③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교원 :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직급이 조교수 이상인 자
 2. 직원 :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정직원인 자
 3. 조교 : 조교로 재직 중인 자 (신설 2018. 4. 1)
 4. 학생 : 학생자치기구 대표인 자
 5.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건학이념에 적합한 자
- ④ 학교법인 임원 및 직원, 외국인 교원, 계약직 직원, 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출장 중인 자는 평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제 4조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④ 평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10. 1)
- ⑤ 간사는 회의록의 정리·보관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 제 5조 (임기 등)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각 구성단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
- ③ 학생대표 평의원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대표직의 임기 기간대로 하되, 평의원 임기도중 학생자치기구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그 후임 자치기구 대표를 평의원 잔임기간으로 임명한다.
- ④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2018. 1. 1)

제 6조 (기능) 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10. 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평의위원회는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관계 교직원의 출석요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평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직원 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평의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제시요구 등에 총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13)

제 7조 (회의) ① 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한다. (개정 2012. 7.22)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5인 이상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9. 2.13)

④ 회의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의장은 회의일 3일전까지 일정과 안전에 관하여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3일전 서면통보가 불가능한 긴급사안일 경우 의장은 일정과 안전명을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제 8조 (삭제 2008.10. 1)

제 9조 (심의결과 통보 및 재심요청) ① 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7일 이내에 간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9. 2.13)

② 총장은 평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③ 제2항의 재심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평의위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

제10조 (신분보장)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1. 정년퇴직, 의원면직 및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등 제3조 제3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징계 의결 요구된 자 및 징계의결 중인 자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휴직 또는 6개월 이상의 출장 및 연수 등의 인사발령을 받은 자
5. 해임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자

제11조 (평의원의 대우)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 이 회의 예산은 대학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제13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평의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